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명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6

발의연월일: 2020. 6. 3.

발 의 자:이명수·박덕흠·김성원

홍문표 · 조경태 · 추경호

박성중 · 김희국 · 임이자

성일종 · 이채익 의원

(11일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의 확산으로 인한 국민들의 외부활동 자제 및 외국인 관광객의 감소로 인한 소비위축으로 소상공인들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음.

이러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나누기 위해 임대인들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등 국민들의 자발적 노력이 전국적으로 확산되 고 있는데, 이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지원할 필요성이 있음.

이에 상가건물 임대인이 2020년 1월 1일부터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인하한 임대료의 80%를 해당 상가건물에 대한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제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고통을 분담하는 임대인을 지원하고자 함(안 제138조의2 신설).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38조의2(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) ①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해당 상가건물에 대해서는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에서 제2호에 따라 인하한 임대료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제한다.
 - 1. 「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을 「소 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(이하 이 조에서 "소상공인"이라 한다)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용 사용을 목적으로 임대할 것
 - 2.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를 인하할 것
 -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해당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인하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갖추어 세액의 공제를 신청하여야 한다.
 -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인하한 임대료의 산정, 세액공제의 신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) 제13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현 행 <u><신 설></u>	제138조의2(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) ①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해당 상가건물에 대해서는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에서 제2호에 따라 인하한 임대료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2021년 12월 31일까지공제한다. 1. 「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을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
	제2조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
	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

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해당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인하한 사실을 입증 하는 서류 등을 갖추어 세액의 공제를 신청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인하한 임대료의 산정, 세액 공제의 신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